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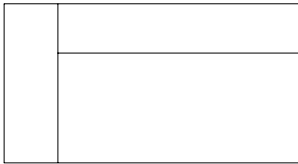


■ 구 정 방 향 ■

가 !
!

· : / : / :

115 () 406-120 810-7072 / FAX 810-7139



604 2010. 12. 13.()

【 】

- 679 () 1
- 680 () 18
- 681 () ... 29

【 】

- 452 () 38
- 453 () · 75

【 】

- 2010-376 ((: 1
) (), () 가) 84

【 】

- 2010-783 () 91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세 기본조례	☐ 제정 이유 ☐ 「 2011.1.1. 1 」 「 」 , 「 」 . ☐ 주요 내용 ☐ 「 」 「 」 ☐ . ☐ , . ☐ (2 10) ☐ (11 26) ☐ (27 47)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0. 12.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79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구세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재산분)
4.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종업원분)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1조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구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구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시세, 구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제13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구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구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른 구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5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채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채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채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채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0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동주민 센터의 공무원 중 2인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인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1조(공유물에 대한 채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채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구세의 채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구청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3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채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4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체납된 구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함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구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구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8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또는 구보에 게재하거나 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39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중 구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0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구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구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 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구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3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그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채납액은 법령 및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구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구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구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알면서 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51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 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2011.1.1. 「 」, 「 」, 「 」 3 16 11 가 , ☐ 주요 내용 ○ ‘ ’ . 가 ‘가」 」, ‘가’ ’가’ (4 9) ○ ‘가」 , 가 . (10 21) ○ ‘ ()’ ‘ ()’ . (22 2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0. 12.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0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
세법」,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

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3.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4.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제6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건설기계: 종류·연식·용도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세율) ①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분	인구 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해당 시의 동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

지로 한다.

제9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재산세

제10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7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8조(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관리인 지정) 구청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주민세(재산분)

제22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

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4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5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지방세법 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말로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는 2011년부터 신설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이관 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12.31.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규정(종교단체 의료업, 인천광역시의료원, 한센정착농원, 인천광역시문화재, 미분양주택,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벤처기업육성지구, 기업도시, 송도테크노파크, 인천항만공사전시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1.1.부터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 (안 제8조) ○ 2011.1.1.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는 데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의 지방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0. 12.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681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인천메트로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

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보칙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 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이 규칙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9조) ○ 구세 부과·징수 처리 절차 및 장부상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26조) ○ 구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제35조) ○ 체납자 재산의 압류, 교부청구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부터 제9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5조부터 제98조)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0. 12. 1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52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과부서의 장 :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 :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구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구세는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시분으로 구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서류의 송달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부 등의 관리) 제6조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4.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정리) 구세징수에 관한 대장, 계산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절 부과·징수

제10조(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구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구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구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 회계연도·구분 : 제4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3. 회계·과목 : 별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주소

가. 개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재한다.

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한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다.

6. 과세대상 : 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대상을 토지면적·건축물면적·차량등록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구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세목 : 법 제7조에 따른 세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줄여서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세액 : 세액란에 맞추어 기재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세액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연도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또는 세목에 대한 세액을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재발급 납세고지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부납부, 분납 등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발행의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의 각 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일부납부” 또는 “분납” 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납부 구세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서
2. 법인장부·검인계약서·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서·사용승인서·판결문·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 등 세액계산 관련 증빙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구세 모사전송 우편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세고지

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수납기관에 해당 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납부구세 모사전송·우편 접수대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구세의 수납) ① 구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징수관의 명에 따라 채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구세 수납내역의 확인점검)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의 부과·신고 및 납부내역과 구금고 수납내역의 자료를 상호대사하여 점검하고 불일치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구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소인

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OCR 미소인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도착자료 등에 대하여는 은행조회 등으로 신속히 확인하여 구세를 납부한 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지방세관계법·조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 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독촉기한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징수촉탁 등)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구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

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전 출입사항 등에 따른 소재 확인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따른 소재 또는 재산의 확인

② 부과철회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경우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 철회를 할 수 없으며, 부과 철회 후 다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구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한 경우 연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세입마감) ① 제10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의 마감은 해당 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거나 그 출납을 폐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정한다.

제26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구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구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을 이월함과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구세환급금

제2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세를 구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구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구세환급금은 체납된 다른 구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구세의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구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구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재산상속일 경우에는 재산의 등기부등본·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구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구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구세환급금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구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63조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년도의 구세환급금을 현년도의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같은 연도내의 구세환급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 및 구세환급금액에서 충당할 금액을 감하고 수납부·징수부 및 세입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세환급금 충당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구세환급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구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금고는 구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3개월 이상 상장된 상장주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협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④ 납세담보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납세자 편의별로 선별하여 정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4. 토지
 5.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
- ⑤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

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정리부(법 제81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정리부)를 작성·정리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등을 행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등”이라 한다)의 재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의 재조사를 하였으나 소재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부과철회를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연 4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1조제5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⑥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법 제85조제1호에 따른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구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납세담

보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구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구세충당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그 밖에 유가증권,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
- ③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구세에 충당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36조(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조례 제26조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체납처분 절차

제37조(자격증명서의 제시 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휴대하고 영 제105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2. 압류조서
3. 수색조서
4. 봉인용지
5. 보관증 용지

제38조(수색)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재산압류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다만, 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② 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포함한다)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그 압류

조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 라고 표시한다.

제41조(압류물건의 보관)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갑, 을)에 따른다.

제3절 압류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 전에 체납된 구세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함에도 질권자가 해당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라 질물의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물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45조(압류통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자·채무자·채권자·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관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갑,을)
2.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
4.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
5.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갑,을)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급청구권의 지방세환급금 그 밖의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 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을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등록촉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등기·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① 세무공무원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인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49조(부동산의 분할·합병·변경의 등기촉탁) ①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 및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등의 압류효력) ① 자동차·건설기계·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구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구세우선권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1조(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 체납자의 압류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채납자의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할 관서에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절 압류의 해제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3자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가 직접 재산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

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57조(교부청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에 대하여 구세채납액의 교부를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의거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시 소관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체납액정리부·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당받거나 충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받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지방세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구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체납구세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구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매각

제59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공매공고) ① 공매공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공매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실황을, 자동차 공매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보를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의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와 함께 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채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②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에서 평가한 가액을 매각예정가격 결정에 참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평가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매할 물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따라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농작물 그 밖에 천연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도 포함한다.

⑥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응) ① 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무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등록 국채 또는 기명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0호서식의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개찰) ①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51호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공매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매방법으로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매인에게 경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해당 경매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공매물 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견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 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58호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매각

연월일·신구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특허권 그 밖의 무체재산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73조(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즉시 재산의 표시·공매 연월일·공매가격·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60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따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귀속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청산

제75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76조(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61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압류채권의 일부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채납처분 종결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3. 채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채납금액의 기재는 인계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채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 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채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 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77조(매각잔여금의 교부) 채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공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3호서식,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8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매대행의뢰서(별지 제64호서식)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그 밖에 참고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지 제6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를 채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채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채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4.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채납

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채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② 채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채납세액을 징수할 때에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채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매대금의 인수·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장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그 밖에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조례 제37조에 따라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76조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그 밖에 경상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세출예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협의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회생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같은 기간 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9절 결손처분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 또는 읍·면·동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추적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따른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따른 조사
3. 주식이동상황에 따른 주주조사
4. 취학아동·병적 및 민방위 관계에 따른 추적조사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구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및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다.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3. 사업장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장 수색조사

나. 사업장 잔여재산조사

다.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조사

라.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

4.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 재산유무

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탐문조사

5. 그 밖에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결산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금융회사 점포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납된 구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채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1조(결손처분의 결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채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70호서식의 결손처분표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93조(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채납처분 담당자는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채납액을 결손처분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행위
3. 채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제9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

지 제75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시장 의견조치)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령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구청장의 의견

제98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8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구세 회계과목 코드(제12조관련)

표준세목코드	세목명	대표세목명	비고
103000	면허세		
103001	면허세(일반)	면허세	
103002	면허세(차량)		
104000	주민세		
104009	주민세(재산분)	주민세	
105000	재산세		
105001	(2011이전)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05002	(2011이전)재산세(선박)		
105003	(2011이전)재산세(항공기)	재산세	
105004	(2011이전)재산세(토지)		
105005	(2011이전)재산세(주택)		
105099	(2011이전)재산세(기타)		
105301	재산세(건축물)	재산세	11세목코드 추가
105302	재산세(선박)		
105303	재산세(항공기)		
105304	재산세(토지)		
105305	재산세(주택)		
105399	재산세(기타)		
111000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114000	등록면허세		
114001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11세목코드 추가
114002	등록면허세(등록)		
132001	사업소세(재산할)	사업소세	
132002	사업소세(종업원할)		
140000	지방소득세		
1400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 수구세 부과징 수 규칙 전부개 정규칙	☐ 개정 이유 ○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되어 3개의 법률로 분법되고 지방세의 일부 세목이 통·폐합 됨에 따라 전면 재정비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세목 분야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현행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기존 '면허세'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12조) ○ 현행 지방세법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함에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 ‘주민세(재산분)’과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부과징수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0. 12. 1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53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등록면허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① 부과부서의 장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은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한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다른 시·도(다른 자치구를 포함한다) 관할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계되는 총채권금액과 처음으로 설정한 저당권 등기·등록원부 등 관계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면허취소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서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로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대장 등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조례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전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장과 면허부여기관의 관계공부를 대조하여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법 제23조제2호 후단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에 따른 면허의 종류 구분에 따른다.
2. 면적, 업태, 의자 또는 고용원의 수 등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서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갱신 또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는 과거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려는 경우 면허증서 발급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종별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진술에 의거 종별을 구분하고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도록 한 후 면허부여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재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

지 제9호부터 제12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세(재산분)

제1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

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제2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장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 도시관리계획(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9호('10.02.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85호(' 10.06.2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55) 및 연수구청 도시경관과(☎032-810-75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2.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인천 도시관리계획(청학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청학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25,226.8	-	25,226.8	2000.4.14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226.8	-	25,226.8	100.0	
주거 지역	소 계	24,831.9	-	24,831.9	98.4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93.9	-	23,893.9	94.7	
	제2종일반주거지역	938.0	-	938.0	3.7	
녹지 지역	소 계	394.9	-	394.9	1.6	
	자연 녹지 지역	24.0	-	24.0	0.1	
	보전 녹지 지역	370.9	-	370.9	1.5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청량 지구	자연경관 지구	연수구 동춘동, 청학동, 옥련동 일원	267,987 (370.9)	2000.4.14	

○ ()는 지구내 면적임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청량 지구	최고고도 지구	연수구동춘동, 청학동,옥련동 일원	303,927 (370.9)	2000.4.14	

○ ()는 지구내 면적

II.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청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25,226. 8	-	25,226. 8	2006.1.1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 수	연장 (m)	면적(m²)	노선 수	연장 (m)	면적(m²)	노선 수	연장 (m)	면적(m²)
합계	5	1,064 (453)	11,258 (4,495.8)	-	-	-	3	379 (292)	3,241 (2,545)	2	685 (161)	8,017 (1,950.8)
중로	2	685 (161)	8,017 (1,950.8)	-	-	-	-	-	-	2	685 (161)	8,017 (1,950.8)
소로	3	379 (292)	3,241 (2,545)	-	-	-	3	379 (292)	3,241 (2,545)	-	-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5	12	국지 도로	496 (97)	연수택지지구계	중3-4	일반 도로	2000.04.14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189 (64)	광3-6	소2-3	일반 도로	2007.04.02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136	소2-35	소2-3	일반 도로	2007.04.02	
기정	소로	2	3	8~10	국지 도로	136	소3-2	중3-4	일반 도로	2007.04.02	
기정	소로	2	33	8	국지 도로	107 (20)	중3-4	중3-55	일반 도로	2000.04.14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연수구 청학동 100-12번지 일원	204.8	-	204.8	2007.04.02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 지	경관녹지	연수구 청학동 103-20번지 일원	164.9	-	164.9	-	하수도와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청학5공원	어린이 공원	연수구 청학동 109-8번지 일원	1,714.9 (252.5)	-	1,714.9 (252.5)	1989.11.1 7	() 지구내
기정	-	청학6공원	소공원	연수구 청학동 101-2번지 일원	309.1	-	309.1	2007.4.2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하수도	청학동 102-1번지	청학동 103-13번지	청학동 103-24번지	57.6 (폭원:2.5m)	164.9	2007.4. 2	녹지와 중복결정

■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기 정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번호	획지면적 (㎡)	비 고
계	20,566.1	-	20,566.1	
1BL	2,608.4	1	423.1	공동 개발 권장
		2	514.9	
		3	428.8	
		4	275.1	
		5	318.8	
		6	647.7	
2BL	2,411.9	1	1,865.2	공동 개발 권장
		2	193.5	
		3	353.2	
3BL	2,529.9	1	450.7	공동 개발 권장
		2	463.0	
		3	326.0	
		4	383.0	
		5	438.4	
		6	468.8	
4BL	10,520.8	1	10,520.8	
5BL	2,242.6	1	204.8	주차장
		2	309.1	소공원
		3	1,728.7	종교시설
6BL	252.5	1	252.5	어린이공원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 정

구 분	A	B	C
허 용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공동주택 :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건축자재판매제외)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150%이하	150%이하
높 이 (층)	5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건축한계선	■ 도로변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0m후퇴		

○ 변 경

구 분	A	B	C	D
허 용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공동주택 :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건축자재판매제외)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60%이하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150%이하	150%이하	200%이하
높 이 (층)	5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건축한계선	■ 도로변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0m후퇴			

나. 인천 도시관리계획(청학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위 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2. 사 업 명 (변경없음)

-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3. 사업면적 : 25,226.8m² (변경없음)

4. 시 행 자 (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4-3
- 성 명 :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장 장 정 남

5.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0년 06월 30일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1년 01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0 - 78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통업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점가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외에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코자 함.

나. 대형 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SSM)의 정의(제2조)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상기회사의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나.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제6조)

-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제7조~제10조)

- 협의회 구성·운영(제7조)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토록 함.
- 협의회 업무(제8조)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안을 협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에 대한 지원(제10조)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상공인 지원(제11조)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제14조 ~ 제16조)

-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제17조 ~ 제18조)

- 전통상업보전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시 등록제한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 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수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연수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수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연수구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
2. 연수구의회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가.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대표
 - 나. 관내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 다.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관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 마. 관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 바. 연수구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 연수구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⑧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비밀의 유지) 협의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등

제11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자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4. 용역이나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3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연수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연수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6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7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생협력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8조(조건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연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5호·제6호,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검 토 의 건 서

관련부서	지역경제과		
의안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유통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유	무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검 토 의 건			